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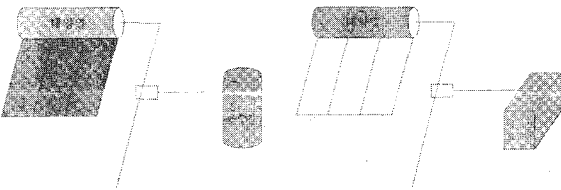
## ■ 심야기 부적정 공급사례 방지 ■

심야전력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보급업체 및 판매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판매업체의 과열경쟁이나 무리한 마케팅 과정에서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부적정 공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래와 같은 사례를 엄격히 금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1.

가. 태양열 온수기를 난방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기히터의 소비전력(kW)을 규정용량보다 크게 제작 설치한 경우(1.5kW 300리터 → 6kW 300리터)

나. 태양열 온수기 2차측 배관에 전기히터가 부착된 보조온수 탱크를 임의로 제작설치하거나 인정품의 소비전력을 변형한 전기온수기나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1) 회사에서 인정한 규격의 전기보일러나 전기온수기를 변형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문제될 것이 없으나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경우이므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급 불가

가) 회사에서 인정한 보일러나 온수기가 아닌 임의 제작된 보조축열조를 설치한 경우

→ 태양열온수기는 집열판과 온수통이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서로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보조 축열조를 설치하도록 인정한 것은 전혀 없음.

나) 전기보일러나 온수기의 외형은 인정된 제품이나 소비전력을 정격보다 2~3배 크게 히터를 설치한 경우

→ 확인방법 : 송전후 전류를 측정하여 소비전력으로 환산하거나 누전차단기 등 개폐기의 정격전류 및 수량을 보고 소비전력을 추정해보는 방법이 있음(30A 차단기 2개 설치되어 있으면 12kW 정도)

다) 전기신청서상의 제품과 소비전력(kW)은 같으나 축열조의 크기(리터)가 신청용량(리터)보다 현저히 작은 경우

예) 14kW 1200리터 → 14kW 400리터

※ 축열식 전기보일러는 육안으로도 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임. 만약 전기용량은 큰데 온수기 정도의 작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인정품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요망.

☞ 최근에는 농사용 유리온실 등에 인정된 보일러를 설치 후 내선검사가 끝난 뒤 송전완료되면 철거 후 히타가 큰 소형 축열조를 재설치하는 경우까지 발견되고 있음 → 사후에도 발견되면 계기철거 등 조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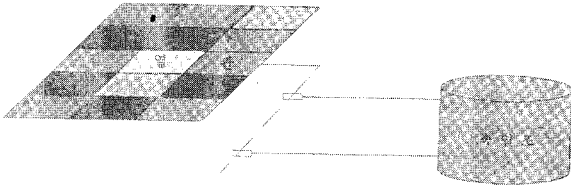
▶ ▶ ▶ 심야기기 부적정 공급사례 방지 ▶ ▶ ▶

**사례 2**

인정된 보일러나 온수기의 크기보다 큰 대형 축열조를 현장에 맞추어 제작 설치하는 경우

가. 태양열 시스템

집열관 위에 온수기가 얹혀진 태양열 온수기가 아니고 집열관을 집중적으로 설치한 뒤 축열조는 별도의 장소에 집열관과 분리하여 대형으로 제작 설치하는 경우



나. 현장 제작한 대형 축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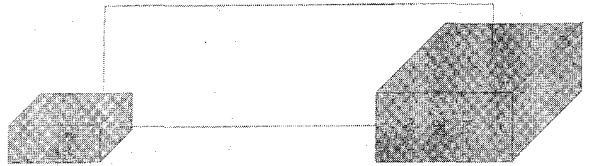
현재 인정 품목은 보일러(사각형) 2,700리터, 온수기(원통형)는 5,000리터가 최대 크기이나 농사용, 목욕탕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9,000리터(90kW) 등을 1개의 축열조로 제작하는 경우는 심야전력 공급대상이 아님.

다. 분리형 전기보일러(축열조와 가열장치가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것)

1) 축열시 전기보일러는 축열조와 히타가 같은 몸체를 이루는 최대용량 30kW 2,700리터까지의 보일러만 인정된 품목임.

2) 작은 크기의 소형 축열조에 히타용량(kW)을 크게 한 가열조에서 온수를 만든 뒤 별도 제작된 축열조에 온수를 저장하는 보일러는 인정품목이 아님.

→ 목욕탕에 기 설치된 온수탱크에 소형전기보일러를 접목하는 경우 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에도 설치될 소지가 있음.



**기타사항.**

가. 잠열식 보일러의 PCM 캡슐을 충전하지 않고 온수만을 채우는 경우도 축열조의 크기를 줄이는(히타용량을 증대시키는) 행위임.

나. 태양열 또는 전기온수기와 기름보일러를 직렬로 연결(온수기의 급탕관을 기름보일러의 급수쪽에 연결하고 기름보일러의 난방출구를 통해 돌아온 환수를 전기온수기 등의 급수쪽에 연결하는 방식)하여 난방보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심야기기를 이중열원식으로 변형하고 축열기능을 없앤 경우에 해당.